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7.

국토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2월 22일, 맹성규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2월 2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6. 2. 1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2026. 4. 15.)

상정, 축조심사

제2차 교통법안심사소위(2026. 4. 21.)

상정, 축조심사

제3차 교통법안심사소위(2026. 4. 29.)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2026. 4. 30.)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맹성규의원)

제안이유

최근 스마트 기기에 기반한 플랫폼을 통한 화물운송 거래가 확산됨에 따라, 플랫폼 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화주와 차주 간의 직접 연결이 가능해지고 공차 운행이 감소하는 등 화물운송의 효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또한, 화물운송 거래의 투명성 강화 및 디지털화에도 기여할 있을 것으로 전망됨.

한편, 플랫폼을 통한 운송 과정에서 운임 미지급, 불법 다단계 거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나 이용자 피해 관리에 소극적인 실정임. 이에 따라 운송 종사자인 차주들이 각종 불공정 행위에 노출되고 있어,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에 대한 제도적 관리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이에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운송플랫폼 사업자 관리 강화를 위해 이용요금 및 이용약관 신고제도와 준수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 및 이용회원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제5호의2 및 제5호의3 신설).

나. 운송사업자가 화물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위탁 받은 물량을 재위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11조).

다. 화물운송플랫폼을 통하여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는 소속된 차량으로 직접 화물을 운송토록 하고, 화물운송플랫폼을 이용하여 화물을 위탁하면 직접 운송으로 보도록 함(안 제11조의2).

라. 화물정보망을 운영하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관하여 화물운송플랫폼 사업자 준수사항 일부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33조).

마. 운송사업자 및 운송주선사업자가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화물운송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3).

바.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의 등록 및 등록취소 기준을 신설함(안 제34조의5 및 제34조의10 신설).

사. 운송플랫폼사업자가 이용요금을 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하고 신고된 이용요금 범위 내에서 이용회원에게 고지하도록 함(안 제34조의6 신설).

아. 안전운행의 확보 및 운송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운송플랫폼사업자의 준수사항과 운송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근거를 마련함(안 제34조의7 및 제34조의9 신설).

자. 운송플랫폼사업자가 플랫폼이용약관을 정할 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플랫폼표준약관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34조의8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오세일)

1.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 정의 신설(안 제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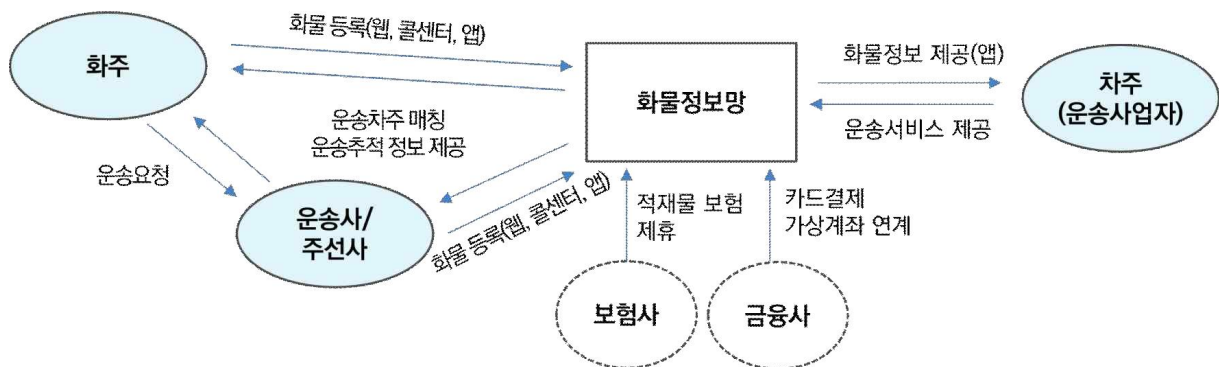
개정안은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과 운송플랫폼 이용회원의 정의를 현행법에 신설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u>운송가맹사업</u> 을 말한다. 3. ~ 5. (생략) <u><신설></u> <u><신설></u>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 ----- <u>운송가맹사업</u> , 화물자동차 <u>운송플랫폼사업</u> ----- -----. 3. ~ 5. (현행과 같음) <u>5의2.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이란 화물자동차의 화물운송과 관련하여 화물정보망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u> <u>5의3. “이용회원”이란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을 위해 제공되는 화물정보망(이하 “화물운송플랫폼”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u> <u>가. 화주</u> <u>나. 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다. 제24조제2항에 따른 운송주선사업자</u> <u>라.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u> 6. ~ 13. (현행과 같음)
6. ~ 13. (생략)	

가. 검토의견

최근 스마트 기기에 기반한 플랫폼을 통한 화물운송 거래가 확산되면서 화물운송 플랫폼 기반 화물운송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며, 현재 (주)전국24시콜화물, 원콜, CJ더운반, 카카오T트럭커, 센디, 고고엑스 코리아 등의 사업자가 영업 중에 있음.

【 화물운송플랫폼 사업구조 개념도 】



자료 : 장소영(2023), 「물류산업 플랫폼화 실태분석을 통한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 한국교통연구원, p.65의 <그림 3-2>

그러나 물류 및 화물운송 부문에서의 플랫폼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이 사실상 자유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화물정보망 내 과적 요구, 차주의 재위탁 등 거래상의 불법행위, 차주 대상 운임 지급에 대한 책임 회피, 소수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 지배력 행사 등 플랫폼을 통한 일부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행위에 대한 관리와 감독에 한계가 있으며 화물운송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¹⁾

1) 한국교통연구원, 「화물운송 플랫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2025.

특히 화주로부터 일감을 받은 주선사가, 화물중개 플랫폼을 통해 모집한 차주에게 운임을 주지 않고 도피하는 등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운임 미지급 문제에 대한 피해 구제를 위해 화물운송 플랫폼 제도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²⁾

이처럼 개정안은 급변하고 있는 화물운송시장의 실태를 반영하여 **화물운송플랫폼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현행법에 신설하려는 것으로, 불법행위 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플랫폼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운송시장의 거래 투명성 및 운송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화물운송 플랫폼은 기존에 화주-주선사-화물정보망-차주의 형태로 운영되었던 화물운송 단계에서 화주와 차주의 직접 연결이 가능하도록 하여 거래단계를 최소화하고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아날로그 방식의 화물운송 거래(종이로 된 인수증 등)를 디지털화하여 기존 운임 정산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운임 등 화물정보를 시장 구성원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며, 개정안은 이러한 플랫폼의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한국경제, 「'먹튀' 소굴된 30조 화물운송 플랫폼」, 2024.1.

이와 유사하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플랫폼 기반 이동서비스의 확산에 대응하여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근거를 신설하였는데, 여객의 운송과 관련한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운송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을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으로 정의하고,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으로 세분화함으로써 택시 시장에 도입된 플랫폼 제도가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이란 여객의 운송과 관련한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이하 “운송플랫폼”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9조의2(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종류)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운송플랫폼과 자동차를 확보(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제34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운송플랫폼을 통해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2.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운송플랫폼을 확보하여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제49조의11에 따른 소속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에 의뢰하여 여객을 운송하게 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자동차를 사용한 여객운송을 중개하는 사업

이에 개정안과 같이 플랫폼의 제도화 시 여객과 차별화되는 화물운송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플랫폼의 제도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운송플랫폼사업 제도화 측면에서 여객과 화물 분야 비교 】

구분	여객자동차(택시) 운수사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서비스특성	여객, 현장수급, 단발성, 불특정 다수 대상	화물, 사전계약 물량 다수, 일부 단발성
시장규모 (2022년 기준)	매출액 약 8.5조원 종사자 약 24만명 기업체 약 16.7만개	매출액 약 38조 원(운송사업에 한정) 종사자 약 43.6만 명 기업체 약 28.7만 개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인·허가	면허제	허가제
수급조절	총량제(지역)	총량제(전국)
경영특성	명의이용 금지	[운송업] 경영의 위탁 (일명 '지입제') 가능 [주선 및 가맹업] 명의이용 금지
관련업종	일반 및 개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알선 및 중개·대리 역할을 하던 업종 부재	일반 및 개인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플랫폼 제도화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신설('20.4) ☞ 플랫폼 운송/중개/가맹 사업으로 세분화	제도화되어 있지 않음 ☞ 운송가맹사업의 수단으로 정보망 정의, 화물정보망의 법적 정의 부재, 우수화물정보망사업자 인증제 시행 중

※ 자료 : 이지선 외(2025), 「화물운송 플랫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다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안 제2조제5호의2는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을 “화물자동차의 화물운송과 관련하여 화물정보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제2조제5호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³⁾도 화물정보망을 통하여 운송가맹점에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사업으로 정의되고 있어 ‘화물정보망의 제공’이라는 요소만으로는 운송가맹사업과 신설되는 운송 플랫폼 사업 간의 구별 기준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고,

기존 현행법에서 사용되던 ‘화물정보망’(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인증받은 화물정보망)과 ‘운송플랫폼’의 구별 등 사업 유형 간 명확한 구분을 위해 개념정의와 용어 사용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자기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거나 화물정보망(인터넷 홈페이지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소속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인 운송가맹점만을 말한다)에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7.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이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이하 “운송가맹사업자”라 한다)의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을 이용하여 운송 화물을 배정받아 화물을 운송하는 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 나.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운송주선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자기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거나 화물정보망(인터넷 홈페이지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소속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인 운송가맹점만을 말한다)에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업자
다.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을 이용하여 운송 화물을 배정받아 화물을 운송하는 자로서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 다만, 경영의 일부를 위탁한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7의2. “영업소”란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곳을 말한다.

【 현행법에서 사용되는 ‘화물정보망’ 용어의 비교 】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받은 화물정보망	화물운송플랫폼
내용	차주, 운송사, 주선사 등 모집된 가맹점이 가입된 정보망. 가맹점은 하나의 가맹정보망만 가입이 가능(폐쇄형)	화물정보망을 운영하는 업체 중 모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물류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인증	화주, 주선사, 운송사, 화물차주 간 화물운송 거래를 연결(개방형)
조문	제34조의4(화물정보망 등의 이용) ①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위·수탁차주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 이나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 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사업자나 위·수탁차주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 이나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 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안 제2조) 5의3. “이용회원”이란 화물자동차 운송 플랫폼 사업을 위해 제공되는 화물정보망(이하 “화물운송플랫폼”이라 한다) 을 이용하는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화주 나. 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다. 제24조제2항에 따른 운송주선사업자 라.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

이와 관련하여 전국개인중대형운송사업연합회에서는 화물정보망 사업의 세부유형(가맹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망, 인증받은 정보망, 플랫폼을 통한 정보망)이 복잡하며, 화물정보망 사업의 등록 및 심사기준이 달라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정보망사업과 개정안의 화물플랫폼 사업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운송플랫폼 사업 등록기준에 운송 주선사업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화물정보망 등록 및 심사 기준을 동일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둘째, 신설되는 운송플랫폼사업과 기존 운송가맹사업 및 운송주선사업과 업역 충돌소지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⁴⁾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로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의미하는데,

운송주선사업과 운송플랫폼사업은 본질적으로 중개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화물 운송계약의 체결을 연결하는 기능을 핵심으로 한다는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로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화물이 이산화물인 경우에는 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점에서 사업 영역이 중첩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은 ‘화물정보망’을 통하여 소속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에 운송을 의뢰하는 사업으로, 역시 화물정보망을 활용한 운송 연계 구조를 가지고 있어, 운송플랫폼사업과의 기능적 유사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임.

【 운송사, 주선사, 가맹사 비교 】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가맹사업자
정의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자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①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②운송사업자·가맹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로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 * 화주와 화물차주가 운송계약을 체결 → 주선사업자는 주선수수료만 수취 ** 화주와 주선사업자, 주선사업자와 운송사·가맹사가 각각 계약을 체결 → 주선사업자는 운송사·가맹사의 차량을 이용하여 화주의 화물을 운송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①자기 화물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거나 화물정보망을 통하여 ②소속 운송가맹점에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사업자 * 가맹사업자 허가 기준 : 차량 50대 이상 보유(운송가맹점이 소유하는 화물차 대수 포함)하되, 8개 이상 시·도에 각각 5대 이상 분포
특징	크게 개인운송사업자(1대)와 일반운송사업자(20대이상)로 나뉘며, 운송사업자는 <u>영업용 노란색 번호판이 부착된 화물차를 보유*</u> * 운송사업자가 차량을 직접 구매하여 직영 근로자	주선사업자는 <u>영업용 화물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u>	가맹사업자는 운송물량을 확보하여 <u>소속 운송가맹점(운송사·주선사)에 제공하거나, 자신이 보유한 영업용 차량으로 운송</u>

	기사를 채용하거나, 화물차 주가 소유한 차량에 영업 용 노란색 번호판을 부착 하여 운영(일명 '지입계약')		
--	--	--	--

참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플랫폼 관련 사업을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운송가맹사업, 플랫폼운송중개사업으로 유형화하여 규율하고 있는데, 이는 플랫폼 사업을 하나의 독립적 업역으로 보기보다는 기존 운송사업 유형에 ‘플랫폼’이라는 수단을 결합하여 체계화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처럼 플랫폼을 운송가맹사업·운송주선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에서는 화물운송 시장의 플랫폼들은 단순히 시스템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콜센터를 두고 물량과 차량을 연결하는 중개(주선)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주선 사업의 영역과 충돌하며, 장기적으로 업종화를 통한 플랫폼의 인위적 육성은 물량 쏠림현상을 만들어 대다수 중소 운수사업자의 경영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중대형운송사업연합회에서는 운송플랫폼사업 도입 시 운송주선사업을 존속시켜야할지 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나. 이해관계자 의견

1) 국토교통부 의견

화물운송 플랫폼 관련 제도적 기반과 플랫폼사업의 법적 의무 부재로 플랫폼 내 불법·부당행위로부터 이용자 보호에 한계가 있어 화물운송 플랫폼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운송시장 관리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개정안에 동의하나, 플랫폼사업자도 법에서 정하는 ‘운수사업자’에는 포함시키나 안전운임과 관련된 사항에서 제외시키는 등 법적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 전국개인중대형화물운송사업연합회 의견

화물정보망을 제공하는 운송사업자의 구분(가맹사업자가 제공하는 화물운송정보망,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인증받은 화물정보망, 개정안에 따른 플랫폼)이 복잡하고, 화물정보망 사업의 등록 및 심사기준이 서로 다르고 가맹사업 정보망은 별도의 등록 및 심사기준이 없어 ① 플랫폼 사업자 통합·일원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②운송플랫폼 등록기준에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포함하여 개정안에 따른 플랫폼 화물정보망과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인증받은 화물정보망의 기준을 동일하게 할 필요가 있음. ③또한 운송플랫폼 사업 도입 시 운송주선사업을 존속시켜야할지 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의견

①화물운송시장의 플랫폼들은 단순히 시스템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콜센터를 두고 물량과 차량을 연결하는 중개(주선) 기능을 수행하며, 이는 오프라인 주선(중개) 사업을 온라인 형태로 운영하는 것으로 주선 사업의 영역과 충돌하며,

②장기적으로 업종화를 통한 플랫폼의 인위적 육성은 물량 쏠림 현상을 만들어 대다수 중소 운수사업자의 경영난 초래할 우려가 있음.

(주선업 겸업 등으로 플랫폼 직접 취급 물량 증가 $\Rightarrow$ 운수업자 취급 물량 감소)

③ 운송사업자의 플랫폼을 매개로 한 타인 차량 이용운송 허용은 주선사업과 중복되어, 운송·주선 구분이 없어지고 운송사업자가 주선으로 물량을 처리하는 등 사업 정의 충돌과 시장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며,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무허가 주선 등 불법행위는 개별 단속과 통제가 불가하므로 원천적인 차단이 필요함.

④또한 플랫폼은 경매 방식으로 주선사 영업력 배제된 화주 물량은 운임 하락 초래하여, 제안 이유에서 순기능적 역할로 제시한 화주와 차주의 직거래는 순기능적 외형과 달리 차주 등 시장참여자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음.

4) 화물연대 의견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에 대한 제도적 관리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동의하나, 플랫폼 이용요금의 상한 설정, 화주 운임 공개, 플랫폼의 운임산정 및 지급에 관한 구체사항 명문화, 표준약관 도입의 수정이 필요함.

(이하 생략)

4.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 복기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붙임]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4.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가맹점만 사용하는 폐쇄형 형태의 ‘운송가맹사업자 화물정보망’ 및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개방형 형태의 ‘화물운송플랫폼’의 구분을 위하여 정의를 명확히 하고, 현행법의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은 화물운송플랫폼으로 등록하여야 하므로 이를 삭제하며, 운송플랫폼사업의 등록기준을 법률에 구체화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2호 중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을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운송가맹사업자가 소속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에 화물운송을 배정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의2·제5호의3을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며, 제8호(중전의 제5호의2) 중 “운송플랫폼 사업”을 “운송플랫폼사업”으로 하고, 제9호(중전의 제5호의3) 중 “다음의 각 목”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조 제7호의2 및 제8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7호(중전의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로 하며, 같은 조 가목 중 “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제24조제2항에 따른 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를 “운수사업자(제34조의5제2항에 따른 운송플랫폼사업자는 제외한다. 제5조의9,

제5조의12 및 제5조의13에서 같다)”로 한다.

12. “운수사업자”란 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제24조제2항에 따른 운송주선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34조의5제2항에 따른 운송플랫폼사업자를 말한다.

안 제11조제19항 중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 화물운송플랫폼을 통하여”를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화물운송플랫폼을 통하여 다른 운송사업자로부터”로 한다.

안 제11조의2제3항 본문 중 “운송사업자,”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와”로, “해당한다),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이나 화물운송플랫폼을 통하여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는”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해당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화물정보망이나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 화물운송플랫폼을”을 “화물정보망이나 화물운송플랫폼을”로 한다.

안 제12조제1항제7호의2 중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 화물운송플랫폼”을 “화물운송플랫폼”으로, “위탁 받은”을 “위탁받은”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및 화물정보망”을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으로 한다.

안 제32조제1항제9호 중 “제11조 및”을 “제11조,”으로, “제외한다)를”

을 “제외한다) 및 제34조의7을”로 한다.

안 제33조 전단 중 “제외한다) 및 제34조의7(제1항 및 제2항은 제외한다)”을 “제외한다) 및 제34조의7(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후단 중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플랫폼사업자”는 “운송가맹사업자”로, “이용회원”은 “운송가맹점”으로”를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플랫폼사업자”는 각각 “운송가맹사업자”로, “화물운송플랫폼”은 “화물정보망”으로, “이용회원”은 “운송가맹점”으로”로 한다.

안 제34조의4를 제60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34조의4) 제1항 및 제2항 중 “화물정보망,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받은 화물정보망 또는 화물운송플랫폼”을 “화물정보망이나 화물운송플랫폼”으로 한다.

안 제34조의5제1항 중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이하 “운송플랫폼사업”이라 한다)을”을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을”로, “국토교통부령으로”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운송플랫폼사업의 등록을”을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등록을”로, “변경하려면”을 “변경하려는 때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국토교통부장관에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물정보 처리 기능, 보안조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물운송플랫폼을 갖출 것
2. 사업계획이 화물운송플랫폼 이용요금 및 부가서비스 운영계획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사무실 등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안 제34조의6제2항 중 “신고된”을 “신고한”으로 한다.

안 제34조의7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를 “요구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제2호 중 “운송사업”을 “운송사업의”로, “제8조제2항에 따른 화물운송”을 “화물운송”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1조의2제3항”을 “제11조제1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중전의 제5호) 중 “유상으로 주선하는”을 “유상으로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중전의 제6호) 중 “그밖에”를 “그밖의”로 하고, 제8호(중전의 제7호) 중 “불법행위”를 “그 밖에 불법행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 ② 운송플랫폼사업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의 명의로 화물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제12조제1항제7호의2를 위반하여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수종사자(화물차주로 한정한다)가 직접 화물을 운송하지 아니하고 재위탁하는 행위

안 제34조의8제1항 전단 중 “플랫폼이용약관”을 “화물운송플랫폼의 이용약관(이하 “플랫폼이용약관”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플랫폼표준약관”을 “화물운송플랫폼의 이용에 관한 표준이 되는 약관(이하 “플랫폼표준약관”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운송플랫폼사업”을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으로, “신고”를 “플랫폼이용약관을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약관”을 “플랫폼이용약관”으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그 밖에 플랫폼이용약관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안 제34조의9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4조의6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이용요금의 조정
2. 제34조의8에 따라 신고한 플랫폼이용약관의 변경
3.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안 제34조의10의 제목 중 “운송플랫폼사업”을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단서 중 “취소”를 “등록을 취소”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정지처분”을 “사업정지 처분”으로 한다.

10. 제34조의11에서 준용하는 제25조를 위반한 경우

제41조제1항제1호 중 “제26조”를 “제26조, 제34조의7(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안 제34조의11의 제목 중 “운송플랫폼사업”을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운송플랫폼사업자”로”를 “각각 “운송플랫폼사업자”로”으로, ““운송플랫폼사업”으로”를 “각각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으로”로 한다.

제41조제1항제1호 중 “제26조”를 “제26조, 제34조의7(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9호 각 목”을 “제2조제13호 각 목”으로 한다.

안 제67조제5호 중 “제33조”를 “제33조 및 제34조의11”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의2 중 “제2항”을 “제2항 본문”으로, “등록을 받지”를 “등록을 하지”로, “등록을 받고”를 “등록을 하고”로 한다.

안 제70조제2항제14호의4부터 제14호의6까지를 각각 제14호의5부터 제14호의7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의4. 제34조의6제2항에 따라 이용회원에게 이용요금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

제71조 중 “제2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종사자격을 취소”를 “제27조제1항, 제32조제1항 또는 제34조의10제1항에 따라 허가, 등록 또는 종사자격을 취소”로, “제28조 및 제33조”를 “제28조, 제33조 및 제34조의11”로 한다.

안 부칙 본문을 삭제하고, 제1조부터 제3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21483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중 제67조제6호의3 및 제6호의4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 중 제34조의7의 개정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운송가맹점이 화물정보망을 이용하는 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화물정보망을 운영하는 자 등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제34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운송플랫폼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34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제2조(정의)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을 말한다.	2. ----- ----- -- <u>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u> -----.
3. 4.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3. ~ 4. (개정안과 같음)
5.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자기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거나 화물정보		5. ----- ----- ----- ----- ----- -----

망(인터넷 홈페이지 및 이동통신 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소속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제3조 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제40조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인 운송가맹점만을 말한다)에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운송가맹사업자가 소속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에 화물운송을 배정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신 설>

5의2.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 사
업”이란 화물자
동차의 화물운송
과 관련하여 화
물정보망을 제공
하는 사업을 말
한다.

-----.
8. “화물자동차 운
송플랫폼사업”이
란 화물자동차의
화물운송과 관련
한 불특정 다수
이용회원의 수요
에 응하여 이동
통신단말장치, 인
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이
하 “화물운송플
랫폼”이라 한다)
을 통하여 화물
운송계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 설>

5의3. “이용회원”이
란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
을 위하여 제공
되는 화물정보망
(이하 “화물운송
플랫폼”이라 한
다)을 이용하는

9. -----

	<u>다음의 각 목에</u> <u>해당하는 자를</u> <u>말한다.</u> <u>가. 화주</u> <u>나. 제3조제3항에</u> <u>따른 운송사업</u> <u>자</u> <u>다. 제24조제2항</u> <u>에 따른 운송</u> <u>주선사업자</u> <u>라. 제40조제1항</u> <u>에 따라 화물</u> <u>자동차 운송사</u> <u>업 경영의 일</u> <u>부를 위탁받은</u> <u>사람</u>	<u>다음 각 목의 어</u> <u>느 하나</u> ----- ----- ----- -----.
6.·7. (생략)	6. ~ 13. (현행과 같음)	가. ~ 라. (개정안과 같음)
<u>7의2.</u> (생략)		
<u>8.</u> (생략)		
<u><신설></u>		
		6.·7. (개정안과 같음)
		<u>10.</u> (현행과 같음)
		<u>11.</u> (현행과 같음)
		<u>12. “운수사업자”란</u> <u>제3조제3항에 따</u> <u>른 운송사업자,</u> <u>제 24 조 제 2 항 에</u> <u>따른 운송주선사</u> <u>업자, 운송가맹사</u>

9. ~ 12. (생략)

13.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으로서 제1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하여 제5조의9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5조의11에 따라

업자 및 제34조의5제2항에 따른 운송플랫폼사업자를 말한다.

13. ~ 16. (현행과 같음)

17. -----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차 안전운송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운임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
한다.

가.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운임:
화주가 제3조
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제24조제2항에
따른 운송주선
사업자 및 운
송가맹사업자
(이하 “운수사
업자”라 한다)
또는 화물차주
에게 지급하여
야 하는 최소
한의 운임

나. (생략)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

가. -----

-----.

가. -----

-----운수
사업자(제34조
의5제2항에 따
른 운송플랫폼
사업자는 제외
한다. 제5조의
9, 제5조의12
및 제5조의13
에서 같다)---

나. (현행과 같
음)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

⑮ (생략)	⑮ (현행과 같음)	⑮ (개정안과 같음)
⑰ 운송사업자는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을 통하여 위탁 받은 물량을 재위탁하는 등 화물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⑰ -----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 화물운송플랫폼을 통하여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 ----- ----- ----- ----- -----.	⑰ -----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화물운송플랫폼을 통하여 다른 운송사업자로부터----- ----- ----- ----- -----.
⑳ ~ ㉔ (생략)	⑳ ~ ㉔ (현행과 같음)	⑳ ~ ㉔ (개정안과 같음)
제11조의2(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등) ① · ② (생략)	제11조의2(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등)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	③ ----- ----- ----- -----운송사	③ (현행과 같음)

업자,

해

당한다), 「물류정
책기본법」 제38조
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이나 화
물운송플랫폼을 통
하여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
자는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④ (개정안과 같음)
⑤ 운송사업자(제3항에 따른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자의 <u>화물정보망</u> 이나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u>화물정보망</u> 을 이용하여 운송을 위탁하면 직접 운송한 것으로 본다.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 ----- ----- ----- <u>화물정보망</u> 이나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u>화물정보망</u> , <u>화물운송플랫폼</u> 을----- -----. -----.	④ (개정안과 같음) ⑤ ----- ----- ----- ----- ----- ----- ----- ----- ----- ----- <u>화물정보망</u> 이나 <u>화물운송플랫폼</u> 을----- ----- ----- -----.
제1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제1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 ----- ----- ----- ----- ----- -----.	제1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 ----- ----- ----- ----- ----- -----.

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1. ~ 7. (생 략) <u><신 설></u>	----- -----. 1. ~ 7. (현행과 같 음) 7의2. <u>운송가맹사업</u> <u>자의 화물정보망</u> <u>이나 「물류정책</u> <u>기본법」 제38조</u> <u>에 따라 인증 받</u> <u>은 화물정보망,</u> <u>화물운송플랫폼</u> <u>을 통하여 위탁</u> <u>받은 물량을 재</u> <u>위탁하는 등 화</u> <u>물운송질서를 문</u> <u>란하게 하는 행</u> <u>위</u>	----- -----. 1. ~ 7. (개정안과 같음) 7의2. ----- ----- <u>화물 정보</u> <u>망이나 화물운송</u> <u>플랫폼</u> ----- ----- ----- <u>위탁 받</u> <u>은</u> ----- -----
8.·9. (생 략) ② (생 략) <u>제4장 화물자동차</u> <u>운송가맹사업 및</u> <u>화물정보망</u>	8.·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8.·9. (개정안과 같 음) ② (개정안과 같음)
<u>제4장 화물자동차</u> <u>운송가맹사업 및</u> <u>화물정보망</u> 제32조(화물자동차 운 송가맹사업의 허가취 소 등) ① 국토교통부	제32조(화물자동차 운 송가맹사업의 허가취 소 등) ① -----	<u>제4장 화물자동차</u> <u>운송가맹사업</u> 제32조(화물자동차 운 송가맹사업의 허가취 소 등) ① -----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
물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다.

<신 설>

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
물정보망 또는 화
물운송플랫폼-----
-----.

제34조의5(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등록 등) ① 화물
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이하 “운송플
랫폼사업”이라 한
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
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송플랫폼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운송플랫폼사업자”
라 한다)가 등록사
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

플랫폼-----
-----.

제34조의5(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등록 등) ① 화물
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을-----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
부령으로-----

-----.

② -----
화물자동차 운송플
랫폼사업의 등록을

---변경하려는 때
에는-----

게 변경등록을 하
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신고하여야 한
다.

③ 제1항에 따른
운송플랫폼사업의
등록기준은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한다.

-----.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

③ 화물자동차 운
송플랫폼사업의 등
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물정보 처리
기능, 보안조치
등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기
준에 맞는 화물
운송플랫폼을 갖
출 것

2. 사업계획이 화물
운송플랫폼 이용
요금 및 부가서
비스 운영계획

	<u>④ 운송플랫폼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 <u>제34조의6(화물운송플랫폼 이용요금의 신고 등) ① 운송플랫폼사업자는 이용요금을 정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u>	<u>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u> <u>3. 사무실 등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는 것</u> <u>④ (개정안과 같음)</u> <u>제34조의6(화물운송플랫폼 이용요금의 신고 등) ① (개정안과 같음)</u>
--	---	--

<신 설>

에 따라 국토교통
부장관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이용요
금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운송플랫폼사업
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이용요금의
범위 내에서 이용
회원에게 이용요금
을 고지하여야 한
다.

제34조의7(운송플랫폼
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운송플랫폼
사업자는 화물운송
플랫폼에 등록되는
화물운송계약에 대
한 각각의 중개수
수료를 이용요금으
로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

-신고한-----

--.

제34조의7(운송플랫폼
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운송플랫폼사업
자는 제24조제1항
에 따른 화물자동
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
상으로 화물운송계
약을 중개·대리하
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
물자동차 운송가맹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
단을 이용하여 자
기의 명의로 계산
으로 화물을 운송
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② 운송플랫폼사업
자는 제34조의6에
따른 이용요금이
아닌 부당한 요금
을 이용회원에게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운송플랫폼사업
자는 이용회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

③ -----

-----.

④ -----

를 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이용회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해당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This image shows a blank sheet of handwriting practice paper. It features ten sets of horizontal dashed lines, each consisting of three parallel lines (top, middle, and bottom) spaced evenly down the page. The first set of lines is at the top, followed by nine more identical sets extending towards the bottom. The lines are light gray and serve as guides for letter height and placement. There is no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ge.

1. 화물의 종류 · 무게 및 부피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
거나 「도로법」
제77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주선 또는 위탁
하는 행위

1. (개정안과 같음)

2. 제3조제1항에 따
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8조제2항에 따

2. (개정안과 같음)

른 화물운송 중
사자격증이 없는
자가 화물을 운
송하는 행위

3. 제5조의1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
반하여 국토교통
부장관이 공표한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한
행위

4. 제11조의2제3항
을 위반하여 화
물운송을 위탁받
은 운송사업자가
해당 운송사업자
에게 소속된 차
량으로 직접 화
물을 운송하지
아니하고 재위탁
하는 행위

3. (개정안과 같음)

4. 제11조제19항--

5. 제12조제1항제7
호의2를 위반하
여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수종

		<u>사자(화물차주로</u> <u>한정한다)가 직접</u> <u>화물을 운송하지</u> <u>아니하고 재위탁</u> <u>하는 행위</u>
5. <u>제24조제1항에</u> <u>따른 화물자동차</u> <u>운송주선사업 허</u> <u>가를 받지 아니</u> <u>한 자가 유상으</u> <u>로 주선하는 행</u> <u>위</u>	6. ----- ----- ----- ----- ----- <u>유 상 으 로</u> <u>화물의 운송을</u> ----- -----	
6. <u>제26조제2항을</u> <u>위반하여 운송주</u> <u>선사업자가 다른</u> <u>운 송 주 선 사 업 자</u> <u>에게 수수료나</u> <u>그 밖에 대가를</u> <u>받고 중개 또는</u> <u>대리를 의뢰하는</u> <u>행위</u>	7. ----- ----- ----- ----- ----- <u>그 밖의</u> ----- ----- -----	
7. <u>불법행위 방지를</u> <u>위하여 국토교통</u> <u>부령으로 정하는</u> <u>행위</u>	8. <u>그 밖에 불법행</u> <u>위</u> ----- ----- -----	
④ <u>운송플랫폼사업</u>	⑤ -----	

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이
용회원의 위반행위
가 확인된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회원이 화물운
송플랫폼을 사용하
지 못하도록 제한
하여야 한다.

⑤ 운송플랫폼사업
자는 이용회원이
타 화물운송플랫폼
및 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을 이용
하는 것을 제한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⑥ 운송플랫폼사업
자는 이용회원이
각 호의 내용을 포
함하여 화물운송계
약을 등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화물의 종류, 무
게(화물적재용 깔
판과 포장물 등

-----신고로

-----경

우에는-----

-----.

<삭 제>

⑥ (개정안과 같음)

을 포함한다) 및
부피(길이 · 너비
· 높이)

2. 화물의 출발지 및 도착지

⑦ 운송플랫폼사업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회원의
화물운송플랫폼 사
용을 제한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물운송질서의 확립 및 이용회원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플랫폼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8(플랫폼이용
약관) ① 운송플랫폼사업자는 플랫폼이용약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

<삭 제>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34조의8(플랫폼이용
약관) ① -----
-----화물운
송플랫폼의 이용약
관(이하 “플랫폼이

<신 설>

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
는 때에도 또한 같
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화물운송플랫폼
의 공정한 거래질
서를 확립하기 위
하여 공정거래위원
회 위원장과 협의
를 거쳐 플랫폼표
준약관을 제정 또
는 개정할 수 있다.

③ 운송플랫폼사업
자가 제34조의5제1
항에 따른 운송플
랫폼사업의 등록
(제34조의5제2항에
변경등록을 포함하
다)을 받는 때에 플

용약관”이라 한다)

② -----

-----화물운송플랫
폼의 이용에 관한
표준이 되는 약관
(이하 “플랫폼표준
약관”이라 한다)---

③ -----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

	<u>랫폼표준약관의 사</u> <u>용에 동의하면 제1</u> <u>항에 따라 신고한</u> <u>것으로 본다.</u> ④ <u>제1항에 따른</u> <u>약관에 포함되어야</u> <u>할 내용, 신고절차</u> <u>및 그 밖에 필요한</u> <u>사항은 국토교통부</u> <u>령으로 정한다.</u>	----- ----- <u>플랫폼이용약관을</u> <u>신고</u>----- -. ④ <u>플랫폼이용약관</u> ----- ----- -그 밖에 플랫폼이 <u>이용약관의 신고에</u> <u>필요한 사항</u>----- ----- -----.
<u><신 설></u>	<u>제34조의9(운송플랫폼</u> <u>사업자에 대한 개</u> <u>선명령)</u> ----- ----- ----- ----- ----- ----- ----- ----- -----. 1. <u>제34조의8에 따</u> <u>라 신고된 플랫</u>	<u>제34조의9(운송플랫폼</u> <u>사업자에 대한 개</u> <u>선명령)</u> ----- ----- ----- ----- ----- ----- ----- -----. 1. <u>제34조의6제1항</u> <u>에 따라 신고한</u>

	<u>폼이용약관의 변경</u> <u>2. 화물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u> <u>3. 제34조의6에 따라 신고한 이용요금의 조정</u> <u>4. 그 밖에 운송플랫폼사업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제34조의10(<u>운송플랫폼사업의 등록취소 등</u>)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플랫폼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	<u>이용요금의 조정</u> <u>2. 제34조의8에 따라 신고한 플랫폼폼이용약관의 변경</u> <u>3.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제34조의10(<u>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등록취소 등</u>) ① ----- ----- ----- ----- ----- ----- ----- -----
--	---	---

<신 설>

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34조의11에서
준용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가 있
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
을 개임하면 취
소하지 아니한다.

2. 거짓이나 그 밖
의 부정한 방법
으로 제34조의5
제1항에 따른 등
록을 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
의 부정한 방법
으로 제34조의5

-----.

제9호-----

-----.

1. -----

-----.

-----등록을 취

소-----.

2. ~ 9. (개정안과
같음)

제2항에 따른 변
경등록을 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
항을 변경한 경
우

4. 제34조의5제3항
에 따른 등록기
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34조의5제4항
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6. 제34조의7에 따
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7. 제34조의8을 위
반하여 플랫폼이
용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
우

8. 정당한 사유 없
이 제34조의9에

	<u>따른 개선명령을</u> <u>이행하지 아니한</u> <u>경우</u>	
	9. <u>이 조에 따른 사</u> <u>업정지명령을 위</u> <u>반하여 그 사업</u> <u>정지기간 중에</u> <u>사업을 한 경우</u> <신 설>	
	② <u>제1항에 따른</u> <u>등록취소 또는 사</u> <u>업정지처분의 기준</u> <u>· 절차, 그 밖에 필</u> <u>요한 사항은 대통</u> <u>령령으로 정한다.</u>	10. <u>제34조의11에서</u> <u>준용하는 제25조</u> <u>를 위반한 경우</u> ② ----- -----<u>사업</u> <u>정지 처분</u>----- ----- ----- -----.
<신 설>	제34조의11(<u>운송플랫</u> <u>폼사업에 관한 준</u> <u>용 규정</u>) <u>화물자동</u> <u>차 운송플랫폼사업</u> <u>에 관하여는 제4조,</u> <u>제16조(같은 조 제8</u> <u>항 및 제9항은 제</u> <u>외한다)부터 제18조</u> <u>까지, 제21조 및 제</u>	제34조의11(<u>화물자동</u> <u>차 운송플랫폼사업</u> <u>에 관한 준용 규정</u>) ----- ----- ----- ----- ----- -----

1. 제11조(제33조에 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 <u>제26조</u> 등에 따 른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지도가 필요한 경우 2.·3. (생략) ②·③ (생략) 제45조(공영차고지의 설치) ① <u>제2조제9 호</u>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영차고지(公 營車庫地)를 설치하 여 직접 운영하거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게 임대 (운영의 위탁을 포 함한다)할 수 있다. 1. ~ 4. (생략)	1. ----- ----- ----- ---제26조, 제34 <u>조의7</u>----- ----- ----- ----- 제45조(공영차고지의 설치) (현행과 같 음)	1. ----- ----- ----- --제26조, 제34 <u>조의7(제33조에 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u>- ----- ----- ----- 2.·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 음) 제45조(공영차고지의 설치) ① <u>제2조제13 호</u>----- ----- ----- ----- ----- ----- ----- ----- ----- -----. 1. ~ 4. (현행과 같
--	---	--

② ~ ⑥ (생략)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5. 제25조(제33조에 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 의무를 위 반한 자 6. (생략) <신설>	제67조(벌칙) ----- ----- ----- ----- -----. 1. ~ 6. (현행과 같 음) 6의2. 제34조의5제1 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받 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 의 부정한 방법 으로 등록을 받 고 화물자동차	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67조(벌칙) ----- ----- ----- ----- -----. 1. ~ 4. (개정안과 같음) 5. -----제33조 및 제34조의11-- ----- ----- ----- 6. (개정안과 같음) 6의2. ----- -----제2항 본문-----등 록을 하지----- ----- -----등록을 하고-----
--	--	---

	<u>운송 플랫폼 사업</u>	-----
	<u>을 경영한 자</u>	-----
<u>6의2. ~ 7. (생략)</u>	<u>6의3.·6의4. (현행</u>	<u>6의3.·6의4. (개정안</u>
	<u>제6호의2 및 제6</u>	<u>과 같음)</u>
	<u>호의3과 같음)</u>	
	<u>7. (현행과 같음)</u>	<u>7. (개정안과 같음)</u>
제70조(과태료) ①	제70조(과태료) ①	제70조(과태료) ①
(생략)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② -----	② -----
어느 하나에 해당	-----	-----
하는 자에게는 500	-----	-----
만원 이하의 과태	-----	-----
료를 부과한다.	-----.	-----.
1. ~ 7의3. (생략)	1. ~ 7의3. (현행과 같음)	1. ~ 14의3. (개정안과 같음)
8. <u>제16조제1항·제2</u>	8. <u>제16조제1항·제2</u>	
<u>항 또는 제17조</u>	<u>항 또는 제17조</u>	
<u>제1항(제28조 및</u>	<u>제1항(제28조, 제</u>	
<u>제33조에서 준용</u>	<u>33조 및 제34조</u>	
<u>하는 경우를 포</u>	<u>의11에서 준용하</u>	
<u>함한다)에 따른</u>	<u>는 경우를 포함</u>	
<u>양도·양수, 합병</u>	<u>한다)에 따른 양</u>	
<u>또는 상속의 신</u>	<u>도·양수, 합병 또</u>	
<u>고를 하지 아니</u>	<u>는 상속의 신고</u>	
<u>한 자</u>	<u>를 하지 아니한</u>	
	<u>자</u>	

	<u>위반한 운송플랫폼사업자(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u>	
<u><신 설></u>	<u>14의5. 제34조의8에 따른 플랫폼이용약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u>	<u>14의6. (개정안 제14호의5와 같음)</u>
<u><신 설></u>	<u>14의6. 제34조의9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u>	<u>14의7. (개정안 제14호의6과 같음)</u>
15. ~ 27. (생략)	15. ~ 27. (현행과 같음)	15. ~ 27. (개정안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제71조(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제71조(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제71조(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제70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경우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사업 또는 종사자	(현행과 같음)	----- ----- ----- ----- 제27조제1항, 제32조제1항 또는 제34조의10제1항에 따라 허가, 등록 또는 종사자격을 취소--

격의 정지, 감차 조치를 명하는 행위 및 제21조제1항(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부칙 <u>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u>	----- ----- ----- ----- -----제28조, 제33조 및 제34조 의11----- ----- ----- ----- -----. 부칙 <u>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21483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중 제67조제6호의3 및 제6호의4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u> <u>제2조(화물자동차 운</u>
---	--	--

		<u>송가맹사업의 준수 사항에 관한 적용</u> <u>례) 제33조의 개정</u> <u>규정 중 제34조의7</u> <u>의 개정규정을 준</u> <u>용하는 부분은 이</u> <u>법 시행 이후 운송</u> <u>가맹점이 화물정보</u> <u>망을 이용하는 건</u> <u>부터 적용한다.</u> <u>제3조(화물자동차 운</u> <u>송플랫폼사업의 등</u> <u>록에 관한 경과조</u> <u>치) 이 법 시행 당</u> <u>시 「물류정책기본</u> <u>법」 제38조에 따</u> <u>라 인증을 받은 화</u> <u>물정보망을 운영하</u> <u>는 자 등 화물자동</u> <u>차 운송플랫폼사업</u> <u>을 경영하고 있는</u> <u>자는 제34조의5제1</u> <u>항의 개정규정에</u> <u>따라 운송플랫폼사</u> <u>업자로 등록한 것</u> <u>으로 본다. 다만,</u>
--	--	--

		<u>이 법 시행 이후 3</u> <u>개월 이내에 제34</u> <u>조의5제1항의 개정</u> <u>규정에 따라 해당</u> <u>화물자동차 운송플</u> <u>랫폼사업을 등록하</u> <u>여야 한다.</u>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운송가맹사업자가 소속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에 화물운송을 배정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7호의2 및 제8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 제9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7호(종전의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제24조제2항에 따른 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를 “운수사업자(제34조의5 제2항에 따른 운송플랫폼사업자는 제외한다. 제5조의9, 제5조의12 및 제5조의13에서 같다)”로 한다.

8.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이란 화물자동차의 화물운송과 관련한 불특정 다수 이용회원의 수요에 응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이하 “화물운송플랫폼”이라 한다)을 통하여 화물운송계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이용회원”이란 화물운송플랫폼을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화주

나. 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다. 제24조제2항에 따른 운송주선사업자

라.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경영의 일부를 위탁 받은 사람

12. “운수사업자”란 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제24조제2항에 따른 운송주선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34조의5제2항에 따른 운송플랫폼사업자를 말한다.

제11조제19항 중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을 통하여”를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화물운송플랫폼을 통하여 다른 운송사업자로부터”로 한다.

제11조의2제5항 중 “화물정보망이나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을 “화물정보망이나 화물운송플랫폼”으로 한

다.

제12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화물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위탁받은 물량을 재위탁하는 등 화물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2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34조의10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등록취소

제23조제1항제8호 중 “제7호”를 “제7호·제7호의2”로 한다.

제4장의 제목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및 화물정보망”을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9호 중 “제11조 및”을 “제11조,”로, “제외한다)를”을 “제외한다) 및 제34조의7을”로 한다.

제33조 전단 중 “제21조 및”을 “제21조,”로,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및 제34조의7(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운송사업자”는 “운송가맹사업자”로”를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플랫폼사업자”는 각각 “운송가맹사업자”로, “화물운송플랫폼”은 “화물정보망”으로, “이용회원”은 “운송가맹점”으로”로 한다.

제34조의4를 제60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34조의4) 제1항 및 제2항 중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을 각각 “화물운송플랫폼”으로 한다.

제4장의2(제34조의5부터 제34조의11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

제34조의5(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등록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 플랫폼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운송플랫폼사업자”라 한다)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물정보 처리 기능, 보안조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물운송플랫폼을 갖출 것
2. 사업계획이 화물운송플랫폼 이용요금 및 부가서비스 운영계획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사무실 등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④ 운송플랫폼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의6(화물운송플랫폼 이용요금의 신고 등) ① 운송플랫폼사업자는 이용요금을 정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용요금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운송플랫폼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이용요금의 범위 내에서 이용회원에게 이용요금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34조의7(운송플랫폼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운송플랫폼사업자는 화물운송플랫폼에 등록되는 화물운송계약에 대한 각각의 중개수수료를 이용요금으로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운송플랫폼사업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의 명의로 계산을 화물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운송플랫폼사업자는 제34조의6에 따른 이용요금이 아닌 부당한 요금을 이용회원에게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운송플랫폼사업자는 이용회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이용회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해당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화물의 종류·무게 및 부피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도로법」 제77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주선 또는 위탁하는 행위
 2.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이 없는 자가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
 3. 제5조의1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한 행위
 4. 제11조제19항을 위반하여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가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차량으로 직접 화물을 운송하지 아니하고 재위탁하는 행위
 5. 제12조제1항제7호의2를 위반하여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수종사자(화물차주로 한정한다)가 직접 화물을 운송하지 아니하고 재위탁하는 행위
 6. 제24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유상으로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행위
 7.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송주선사업자가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는 행위
 8. 그 밖에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⑤ 운송플랫폼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로 이용회원의 위반행위

가 확인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회원이 화물운송플랫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야 한다.

⑥ 운송플랫폼사업자는 이용회원이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화물운송계약을 등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화물의 종류, 무게(화물적재용 깔판과 포장물 등을 포함한다) 및 부피(길이·너비·높이)

2. 화물의 출발지 및 도착지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물운송질서의 확립 및 이용회원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플랫폼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8(플랫폼이용약관) ① 운송플랫폼사업자는 화물운송플랫폼의 이용약관(이하 “플랫폼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플랫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화물운송플랫폼의 이용에 관한 표준이 되는 약관(이하 “플랫폼표준약관”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③ 운송플랫폼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등록(제34조의5제2항에 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받는 때에 플랫폼표준약관의 사용에 동의하면 제1항에 따라 플랫폼이용약관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 플랫폼이용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신고절차 및 그 밖에 플

플랫폼이용약관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9(운송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 운행의 확보 및 운송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송플랫폼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제34조의6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이용요금의 조정
2. 제34조의8에 따라 신고한 플랫폼이용약관의 변경
3.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4조의10(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등록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플랫폼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34조의11에서 준용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하면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의5제2항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

우

4. 제34조의5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34조의5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6. 제34조의7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7. 제34조의8을 위반하여 플랫폼이용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의9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
 10. 제34조의11에서 준용하는 제25조를 위반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의 기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11(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에 관한 준용 규정)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에 관하여는 제4조, 제16조(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8조까지, 제21조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는 “등록”으로,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주선사업자”는 각각 “운송플랫폼사업자”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은 각각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으로 본다.

제41조제1항제1호 중 “제26조”를 “제26조, 제34조의7(제33조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조제9호 각 목”을 “제2조제13호 각 목”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호 중 “허가기준”을 “허가기준 및 제34조의5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으로 한다.

제67조제5호 중 “제33조”를 “제33조 및 제34조의11”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제6호의3 및 제6호의4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34조의5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을 경영한 자

법률 제21483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중 제67조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제6호의3 및 제6호의4로 한다.

제70조제2항제8호 및 제9호 중 “제28조 및 제33조”를 각각 “제28조, 제33조 및 제34조의11”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의2부터 제14호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제34조의5제2항 단서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4의3.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이용요금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4의4. 제34조의6제2항에 따라 이용회원에게 이용요금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

14의5. 제34조의7(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송플랫폼사업자

14의6. 제34조의8에 따른 플랫폼이용약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4의7. 제34조의9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71조 중 “제2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제27조제1항, 제32조제1항 또는 제34조의10제1항에 따라 허가, 등록”으로, “제28조 및 제33조”를 “제28조, 제33조 및 제34조의11”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21483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중 제67조제6호의3 및 제6호의4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 중 제34조의7의 개정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운송가맹점이 화물정보망을 이용하는 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화물정보망을 운영하는 자 등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제34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운송플랫폼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34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u>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u>	2. ----- <u>-----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u>
3.·4. (생략)	3.·4. (현행과 같음)
5.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자기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거나 화물정보망(<u>인터넷 홈페이지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u>)을 통하여 소속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인 운송가맹점만을 말한다)에 의	5. ----- ----- ----- ----- -----(<u>운송가맹사업자가 소속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에 화물운송을 배정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말한다. 이하 같다</u>) ----- ----- -----

되하여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6.·7. (생략)

<신설>

<신설>

-----.

6.·7. (현행과 같음)

8.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
업”이란 화물자동차의 화물운
송과 관련한 불특정 다수 이
용회원의 수요에 응하여 이동
통신단말장치, 인터넷 홈페이
지 등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
그램(이하 “화물운송플랫폼”
이라 한다)을 통하여 화물운
송계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이용회원”이란 화물운송플
랫폼을 이용하는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를 말한다.

가. 화주

나. 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
사업자

다. 제24조제2항에 따른 운송
주선사업자

라.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

7의2. (생략)

8. (생략)

<신설>

9. ~ 12. (생략)

13.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으로서 제1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하여 제5조의9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5조의11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운임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자동차 운송사업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

10. (현행 제7호의2와 같음)

11. (현행 제8호와 같음)

12. “운수사업자”란 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제24조제2항에 따른 운송주선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34조의5제2항에 따른 운송플랫폼사업자를 말한다.

13. ~ 16. (현행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와 같음)

17. -----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

가.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운
임: 화주가 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제24조
제2항에 따른 운송주선사
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
(이하 “운수사업자”라 한
다)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
급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운임

나. (생략)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 ⑱ (생략)

⑲ 운송사업자는 제11조의2제5
항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물류정책기
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 받
은 화물정보망을 통하여 위탁
받은 물량을 재위탁하는 등 화
물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⑳ ~ ㉔ (생략)

제11조의2(운송사업자의 직접운
송 의무 등) ① ~ ④ (생략)

⑤ 운송사업자(제3항에 따른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

가. -----

-----운수사업자(제3
4조의5제2항에 따른 운송
플랫폼사업자는 제외한다.
제5조의9, 제5조의12 및
제5조의13에서 같다)----

나. (현행과 같음)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 ⑱ (현행과 같음)

⑲ -----운송가맹사업
자의 화물정보망이나 화물운송
플랫폼을 통하여 다른 운송사
업자로부터-----

⑳ ~ ㉔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운송사업자의 직접운
송 의무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자의 <u>화물정보망</u>이나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u>화물정보망</u>을 이용하여 운송을 위탁하면 직접 운송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7. (생략) <u><신설></u> 8.·9. (생략) ② (생략) 제22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 ----- ----- -----<u>화물정보망</u>이나 <u>화물운송플랫폼</u>----- ----- -----. 제1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 ----- ----- -----. 1. ~ 7. (현행과 같음) 7의2. <u>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u>이나 <u>화물운송플랫폼</u>을 통하여 위탁받은 물량을 재위탁하는 등 <u>화물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u> 8.·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청문) ----- ----- -----
--	---

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신설>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제5호·제6호·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7의2. (생략)

8. 제12조제1항제3호·제7호 및 제9호를 위반한 경우

9.·10. (생략)

② · ③ (생략)

제4장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및 화물정보망

제32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가맹사업자가 다

-----.

1. ~ 5. (현행과 같음)

6. 제34조의10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등록취소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등) ① -----

-----.

1. ~ 7의2. (현행과 같음)

8. -----제7호·제7호의2-----

9.·10.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장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제32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① -----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handwriting practice paper. It contains ten identical sets of three horizontal dashed lines, designed to help children learn letter formation and alignment. Each set consists of a top solid line, a middle dashed line, and a bottom solid line. The sets are evenly spaced across the page.

1. ~ 8. (현행과 같음)

9. -----제11조,

-----제 외 한
다) 및 제34조의7을-----

9의2. ~ 1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3조(준용 규정) -----

제21조,-----

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송약관”은 “운송가맹약관”으로, “운송사업자”는 “운송가맹사업자”로 본다.

제34조의4(화물정보망 등의 이용)

①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위·수탁차주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사업자나 위·수탁차주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을

-제외한다) 및 제34조의7(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제외한다)-----.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플랫폼사업자”는 각각 “운송가맹사업자”로, “화물운송플랫폼”은 “화물정보망”으로, “이용회원”은 “운송가맹점”으로-----.

제60조의3(화물정보망 등의 이용)

① -----

-----화물운송플랫폼-----.

② -----

-----화물운송플랫폼-----

이용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

제4장의2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

제34조의5(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등록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운송플랫폼사업자”라 한다)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물정보 처리 기능, 보안조

<신 설>

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물운송플랫폼을 갖출 것

2. 사업계획이 화물운송플랫폼 이용요금 및 부가서비스 운영 계획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사무실 등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④ 운송플랫폼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의6(화물운송플랫폼 이용요금의 신고 등) ① 운송플랫폼사업자는 이용요금을 정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용요금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 설>

② 운송플랫폼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이용요금의 범위 내에서 이용회원에게 이용요금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34조의7(운송플랫폼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운송플랫폼사업자는 화물운송플랫폼에 등록되는 화물운송계약에 대한 각각의 중개수수료를 이용요금으로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운송플랫폼사업자는 제24조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의 명의로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운송플랫폼사업자는 제34조의6에 따른 이용요금이 아닌 부당한 요금을 이용회원에게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운송플랫폼사업자는 이용회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이용회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해당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화물의 종류·무게 및 부피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도로법」 제77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주선 또는 위탁하는 행위

2.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이 없는 자가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

3. 제5조의1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한 행위

4. 제11조제19항을 위반하여 화

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가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차량으로 직접 화물을 운송하지 아니하고 재위탁하는 행위

5. 제12조제1항제7호의2를 위반하여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수종사자(화물차주로 한정한다)가 직접 화물을 운송하지 아니하고 재위탁하는 행위

6. 제24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유상으로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행위

7.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송주선사업자가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는 행위

8. 그 밖에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 운송플랫폼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로 이용회원의 위

<신 설>

반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회원이 화물운송플랫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야 한다.

⑥ 운송플랫폼사업자는 이용회원이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화물운송계약을 등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화물의 종류, 무게(화물적재용 깔판과 포장물 등을 포함한다) 및 부피(길이·너비·높이)

2. 화물의 출발지 및 도착지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물운송질서의 확립 및 이용회원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플랫폼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8(플랫폼이용약관) ① 운송플랫폼사업자는 화물운송플랫폼의 이용약관(이하 “플랫폼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

<신 설>

도 또한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 플랫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화물운송플랫폼의 이용에 관한 표준이 되는 약관(이하 “플랫폼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③ 운송플랫폼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등록(제34조의5제2항에 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받는 때에 플랫폼 표준약관의 사용에 동의하면 제1항에 따라 플랫폼이용약관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 플랫폼이용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신고절차 및 그 밖에 플랫폼이용약관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9(운송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운행의 확보 및 운송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송플랫폼

<신 설>

폼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제34조의6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이용요금의 조정

2. 제34조의8에 따라 신고한 플랫폼이용약관의 변경

3.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4조의10(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등록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플랫폼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34조의11에서 준용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입하면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의5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

4. 제34조의5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34조의5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6. 제34조의7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7. 제34조의8을 위반하여 플랫폼이용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의9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사업정지기

<u><신 설></u> 제41조(경영 지도) ①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개선 또는 운송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u>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u> 10. <u>제34조의11에서 준용하는 제25조를 위반한 경우</u> ② <u>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의 기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34조의11(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에 관한 준용 규정)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에 관하여는 제4조, 제16조(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8조까지, 제21조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는 “등록”으로,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주선사업자”는 각각 “운송플랫폼사업자”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은 각각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으로 본다.</u> 제41조(경영 지도) ① ----- ----- ----- ----- -----
--	---

에 해당하는 경우 운수사업자를 지도할 수 있다.	----- -----.
1. 제11조(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6조 등에 따른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지도가 필요한 경우	1. ----- -----제26조, 제34조의7(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② ③ (생략)	② ③ (현행과 같음)
제45조(공영차고지의 설치) ① 제2조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영차고지(公營車庫地)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45조(공영차고지의 설치) ① 제2조제13호 각 목-----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61조(보고와 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수사업자나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대하여 그 사업 및 운임에 관한 사항이나 그 화물자	제61조(보고와 검사) ① ----- ----- ----- ----- ----- -----

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운수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1. 제3조제7항, 제24조제6항 또
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허가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

2. 3. (생략)

② (생략)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5. 제25조(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6. (생략)

<신 설>

[illegible]

1. -----
-----허가
기준 및 제34조의5제3항에 따
른 등록기준-----

2.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7조(벌칙) -----

-----.

1. ~ 4. (현행과 같음)

5. -----제33조 및 제34조의1
1-----

6. (현행과 같음)

6의2. 제34조의5제1항 또는 제2

	<u>항 본문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을 경영한 자</u>
<u>6의2. · 6의3. (생략)</u>	<u>6의3. · 6의4. (현행 제6호의2 및 제6호의3과 같음)</u>
7. (생략)	7. (현행과 같음)
제70조(과태료) ① (생략)	제7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 -----.
1. ~ 7의3. (생략)	1. ~ 7의3. (현행과 같음)
8. 제16조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제1항(<u>제28조 및 제33조</u>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양도·양수, 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 ----- <u>제28조, 제33조 및 제34조의11</u> ----- ----- -----
9. 제18조제1항(<u>제28조 및 제33조</u>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 <u>제28조, 제33조 및 제34조의11</u> ----- ----- -----
10. ~ 14. (생략)	10. ~ 14. (현행과 같음)
<u><신설></u>	<u>14의2. 제34조의5제2항 단서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u>

<u><신 설></u>	<u>지 아니한 자</u>
	<u>14의3.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u>
	<u>이용요금에 관한 신고를 하지</u>
	<u>아니한 자</u>
<u><신 설></u>	<u>14의4. 제34조의6제2항에 따라</u>
	<u>이용회원에게 이용요금을 고</u>
	<u>지하지 아니한 자</u>
<u><신 설></u>	<u>14의5. 제34조의7(제33조에서</u>
	<u>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u>
	<u>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송</u>
	<u>플랫폼사업자</u>
<u><신 설></u>	<u>14의6. 제34조의8에 따른 플랫</u>
	<u>폼이용약관의 신고를 하지 아</u>
	<u>니한 자</u>
<u><신 설></u>	<u>14의7. 제34조의9에 따른 개선</u>
	<u>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u>
15. ~ 27. (생 략)	15. ~ 2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1조(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제70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경우 제19조제1 항, 제23조제1항, <u>제27조제1항</u> <u>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가</u> <u>또는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u> <u>사업 또는 종사자격의 정지, 감</u>	제71조(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 ----- ----- <u>제27조제1항,</u> <u>제32조제1항 또는 제34조의10</u> <u>제1항에 따라 허가, 등록</u> ----- -----

차 조치를 명하는 행위 및 제21조제1항(<u>제28조 및 제33조</u>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 -----<u>제28조, 제33조 및 제34조의11</u>----- ----- ----- -----.
--	---